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소 비 자 생 활 협 동 조 합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대한 지원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고,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원격통신 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개최를 허용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합등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 확대(안 제3조)

- 1) 생협은 지역주민(학교생협의 경우 학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생협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이나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생협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실제 생협이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 및 학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었음. 이에 따라 생협법 일부개정을 통해 조합등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내용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 기존 시행령에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관해서만 규정하던 것을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료 면제에 대해 규정하도

록 함.

- 3) 생협과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상호발전의 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등 도입(안 제9조, 제9조의2)

- 1) 현행 생협법은 대면총회만을 허용하고 있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총회 구성원 집합이 불가능하여 생협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따라 생협법 일부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때에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의 구체적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 3) 재난 등의 상황에서도 총회가 원활히 개최됨으로써 생협 운영이 보다 순조롭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3. ~ 3. 14.)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국유재산등의 사용료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 사용료”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국유재산등”이라 한다) 사용료”로, “국유재산의”를 “국유재산등의”로 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의”를 “국유재산등의”로,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법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한 조합은 총회 소집의 통지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

- 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② 법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한 조합은 총회 소집의 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조합원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③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조합원 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조합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문서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⑥ 조합원이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11조의3(중전의 제10조의3)제4항 중 “제10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제3조(국유재산등의 사용료 면제)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 재산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① ----- 국유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국유재산등”이라 한다) 사용료 ----- 국유재산등의 ----- ----- . 이 때 공유재 산 및 물품의 관리청이란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공공단체를 말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 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등----- ----- ----- ----- -----.
1. 조합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국유재 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 용한 경우	1. ----- 국유재 산등----- -----
2. 조합등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2. ----- 국유재산등----- -----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③ 국유재산등의 -----

----- 「국유재산
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및 선
거권의 행사) 법 제27조의2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
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
한 조합은 총회 소집의 통지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서
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9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
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법
제2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
거권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행
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
라 한다)하는 경우 조합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 자료를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법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한 조합은 총회 소집의 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조합원의 전자투표

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조합원 확인절차 등의 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조합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문서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⑥ 조합원이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중

<u>제9조 ~ 제10조의2</u> (생략) <u>제10조의3</u>(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신청내용이 <u>제10조의2제1항</u>에 따른 추가 개설인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절차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u>제11조 ~ 제19조</u> (생략)	<u>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u> <u>제10조 ~ 제11조의2</u> (현행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와 같음) <u>제11조의3</u>(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11조의2제1항</u>----- ----- ----- ----- ----- -----. <u>제12조 ~ 제20조</u> (현행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407